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2조).
-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단서 및 제9항 신설).
-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전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함(안 제6조제1항).
-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방해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제출 요구받은 서류를 고의로 파기·은닉한 자, 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요구받고도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로 위증 등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II. 검토의견

-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송달방식의 효력 보완을 위한 사전 동의 절차 및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 명시 등 필요

개정안은 국회에서 이 법에 따라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보고, 서류등(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¹⁾)의 제출,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할 때,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한하여 그 요구서²⁾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6항 단서 신설).

1)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2)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등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송달 관련 입법례를 보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 등은 ①송달 상대방의 사전 동의나 신청을 전제로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송달 방식을 허용하고, ②전자송달의 효력 시점을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자송달을 인지하지 못한 송달 상대방이 귀책사유 없이 불리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송달 기한 준수 여부 관련 불필요한 혼란 및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

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정안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서류등의 제출요구서 요구·제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기존 송달 관련 입법례와 체계적으로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송달받을 자가 미리 동의하는 경우에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송달의 효력 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의 경우, 국회사무처가 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의 구조³⁾, 사전에 전자송달 동의를 통해 송

3)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은 ‘등록’ 기능과 ‘발송’ 기능이 구분되어 있음. ‘등록’의 경우 자료를 발송하려는

달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한 점, 송달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미확
인하여 ‘7일 전 송달’ 원칙 준수를 어렵게 하고 회의 진행이 불안정해지
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성, 전자송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⁴⁾ 등을 고려
하여 서류등의 제출요구서를 “전자시스템에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
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사무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표 1> 안 제5조제6항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⑤ (생략)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u><단서 신설></u>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다만, 서류등의 제출요구서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제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단서 삭제>

자가 그 내용을 시스템에 작성·저장하는 기능이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발송’하여야 송달 등 상대방이 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됨.

- 4) [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6헌가19 결정 국세기본법제12조제1항단서위헌제청]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면 납세자는 전자송달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통해 전자송달을 받았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점, 홈택스의 역할과 기능 및 이에 대한 납세자의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송달할 서류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한 입법자의 선택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

→ 이와 관련, 현재 국회사무처의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발송’하였을 때 송달 상대방이 전자송달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함.

